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3.

발 의 자 : 김현정 · 김한규 · 임호선
최민희 · 박상혁 · 박민규
강준현 · 황명선 · 전현희
손명수 · 신정훈 · 김준환
민병덕 · 박홍배 · 김용만
이학영 · 이강일 · 한병도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(제6조의3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

영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5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부동산감독원 공무원) ①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동산감독원의장이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「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
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·보유·이용·처분 등과 관련하여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3조제1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제1항 및 「관세법」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·제5항을 위반한 범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등의 개발·정비·공급·거래·임대차 및 부동산등에 관한 중개·

감정평가·금융거래·등기·경매·공매 등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는 「형법」 제114조,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137조, 제225조부터 제235조(제230조·제233조 및 이들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까지,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, 제314조, 제315조, 제327조, 제347조, 제351조(제347조의 죄에 한정한다), 제352조(제347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정한다)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범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행위로 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

②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 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3(부동산감독원 공무원)</u> <u>①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</u> <u>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</u> <u>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</u> <u>동산감독원의 장이 아닌 고위</u> <u>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</u> <u>원과 3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</u> <u>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다음</u> <u>각 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</u> <u>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「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</u> <u>영에 관한 법률」 별표 1 각</u> <u>호에 해당하는 범죄</u> <u>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</u> <u>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</u> <u>부동산등의 취득·보유·이용</u> <u>· 처분 등과 관련하여 「조세</u> <u>법 처벌법」 제3조제1항,</u> <u>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2조제1</u> <u>항 및 「관세법」 제270조제1</u> <u>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</u> <u>· 제5항을 위반한 범죄(다른</u> <u>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</u>

우를 포함한다)

3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개발·정비·공급·거래·임대차 및 부동산등에 관한 중개·감정평가·금융거래·등기·경매·공매 등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는 「형법」 제114조,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, 제137조, 제225조부터 제235조(제230조·제233조 및 이들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까지,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, 제314조, 제315조, 제327조, 제347조, 제351조(제347조의 죄에 한정한다), 제352조(제347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정한다),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범죄(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행위로 인한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의 범

죄

②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며
부동산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
한 사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
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
으로서 부동산감독원장의 제청
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
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
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
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